

유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
전문가,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 여성폭력 특
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진정

I. 기본 정보

진정인

명칭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국가 대한민국

II. 핵심내용

대한민국 학생인권 및 지자체의 인권정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회와 충청남도의회에서 혐오차별세력에 의해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금지조항이 혐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와 유사한 시도로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일정상 2023년 2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험이 높으며, 충청남도시의회에서 2023년중에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될 위험이 높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도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교과서와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 향후 7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라는 용어가 청소년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성평등", "재생산권"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킨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주장이자 교육에서의 성평등 관점을 크게 후퇴시키는 차별적 주장이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육부는 위 내용을 12월 31일 이내로 고시할 예정이며, 바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인권정책의 후퇴 전에 유엔 특별절차의 긴급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III. 배경

1.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2022. 6. 1.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2022. 9. 26.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통·폐합 등의 논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그리고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현재 일부 지역사회에서 인권조례 또는 지역인권위원회의 폐지 및 인권담당부서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¹

3. 뿐만 아니라 2022. 11. 9.에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명시적으로 ‘성소수자,’ ‘성평등’ 및 ‘재생산권’ 용어를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 중 ‘성소수자’를 삭제하였고, ‘성 관련 표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고,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였다고 공표했습니다.

IV. 최근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조례 폐지 시도 상황

4.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서울특별시에서는 2012년 서울시민이 발의하여 제정·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조례청구가 이루어져 2022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에 동의하는 2만 5천명 이상의 청구인의

¹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2. 9. 26.,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8355&menuid=001004002001>

명부가 제출되었습니다.² 서울시의회는 심의를 거쳐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한 뒤, 청구가 수리되면 청구안이 서울시의회에 부의되어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체 112명 중 76명이라는 점에서 청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청구인 대표자(원성웅 목사)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며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조차 혐오표현으로 간주해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 대해 동성애, 성전환, 혼전 성행위(임신과 출산 관련) 등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거나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³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표현이자 혐오적 주장이며, 청소년이 성적 권리 및 재생산권을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려는 시도입니다.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 4)은 2022. 11. 16.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교권을 침해하고 있고, 동성애를 비롯한 성해방을 조장하고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감의 입장을 묻기도 했습니다.⁴

² 기독교일보 ‘6만여 서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 서울시의회에 제출, 2022. 8. 18.,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7820>

³ 기독교일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서명 요건 충족 확실시, 2022. 8. 11.,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7650>

⁴ 서울신문, 김혜영 서울시의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교육공동체 만들어 나가야, 2022. 11. 17.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17500139>

8. 서울에서와 비슷하게, 충청남도에서는 2022. 8.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청구되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2. 8.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주민 발의로 청구되어 주민 서명을 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인권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사유 역시 모두 주요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사유는 인권기본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고, “제 1 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10. 충청남도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8. 4. 3.,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세력의 조례폐지 요구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충청남도의회가 받아들여, 한 차례 폐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권조례를 인권기본조례로 격상하여 새롭게 제정한 것인데, 4년여 만에 또다시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⁵

11. 지난 2018년 4월 3일, 빅터 마드리갈 블로그 유엔인권이사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은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의 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에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마드리갈 블로그 특별보고관은 “반인권 집단의

⁵ 대전일보, 충남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반헌법적" - "물상식" 찬반 논란, 2022. 9. 6.,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526>

압력으로 현재의 법적·제도적 인권 토대를 해체한다면 중대한 우려를 낳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 서한이 충청남도의회 의원들과 공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한에서는 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참고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의 보호사유로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심심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하여도 “이러한 시도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증오를 강화하고 성소수자를 폭력과 차별로 보호하기 위한 인권 체계를 위협한다”며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및 공공 정책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⁶

V.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 및 폐지 절차 예상

1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을 구체화한 조례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현재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인권의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⁶ 한겨레, UN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충남인권조례 폐지 중대한 우려,” 2018. 4. 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9812.html

13. 특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 관련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등 현재까지 한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령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4. 그럼에도 성소수자 학생은 대한민국에서 인권적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 5·6 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사국이 청년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상황인 것”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CRC/C/KOR/5-6, para. 36).
15.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성소수자 차별·혐오적 주장과 “학생인권만 중시하는 해당 조례가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제관계를 상호 존중이 아닌 감시와 통제 관계로 변모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는 상호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각 권리주체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권리 실현을 지향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교사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무 이행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 및 지지하고,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 한 학생의 성장과 발달로 인해 교사의 권위 또한 존중받는 선순화적 변화가 도모될 수 있습니다.

1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청구가 2022. 12. 경 서울시의회에서 수리될 경우, 2023. 2. 정기 시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VI.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소수자’와 ‘성평등’, ‘재생산권’ 용어의 삭제

17. 대한민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2. 11. 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이하 「2002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면서 그 내용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약 7년간 모든 교과서와 교육 정책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용어가 삭제될 예정입니다.

18. 교육부는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교육과정 시안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는데,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이 무엇인지는 지난 2022. 9.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 7,860건의 주요 내용을 밝힌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 도덕 등 교과에서 “‘성소수자,’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및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의 삭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동성애와 성전환 관련 내용 제외, 낙태 관련 내용 등을 삭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 및 교육현장을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은 위와 같이 명백히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하고, 교육에서의 성평등 관점을 크게 후퇴시키는 차별적 주장들에

대해 즉시 문제를 지적했고, 교육부가 성평등한 교육과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⁷

19. 그러나, 교육부는 성소수자 혐오 및 성평등 관점을 후퇴시키는 차별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은 학교 수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데,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5 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 12년의 과정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해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기존 도덕·보건 교육과정에 담긴 ‘성평등’이라는 표현 역시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되면서 사회구조의 불평등을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서만 다룰 우려가 큼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됨으로써, 여성이 재생산권에 기반해 안전하나 임신중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포함하여 성적 권리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 또한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정부에 “청소년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성평등을 핵심기본권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2002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소수자’와 ‘성평등’ 등 보편적인 표현의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자유주의를 강조해온

⁷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명동 공동성명, 혐오에 굴복해 후퇴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을 규탄하며 “교육부는 지울수록 선명해지는 성평등의 가치와, 성소수자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2. 11. 15., <http://minbyun.or.kr/?p=53426>

윤석열 정부가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인권 담론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21.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2022. 12.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 31. 내로 고시될 예정이며, 2024년 초등 1·2학년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해 약 7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토대로서 교과서, 교실 수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이 보편적 인권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송두환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평등'과 '성 소수자' 등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하여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소극적 차별금지를 넘어 적극적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⁸ 또한 '성 소수자' 용어의 삭제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VII. 요청사항

2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 중 절차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조례도 도미노처럼 폐지될 가능성이

⁸ 국가인권위원회,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2. 11. 28.,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2&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8576>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18. 4.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3. 충청남도의회의 조례 폐지안 재의결을 앞두고 마드리갈-블로즈 유엔인권이사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한 방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으며, 조례가 폐지된 직후 마드리갈 블로즈 유엔 성소수자 독립전문가가 충청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23. 위 사례와 유사하게,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특히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하면 2022. 12. 31. 전까지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인권조례 폐지 시도, 그리고 ‘성소수자’, ‘성평등’ 및 ‘재생산권’ 등의 용어를 삭제하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나 서한을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하게 발송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4. 나아가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교육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주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등의 권리에 대한 백래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바, 유엔 특별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국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하여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록 1. 사건일지

- 2022. 8. 18.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청구인 명부 제출
- 2022. 9. 6.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및 충남인권기본조례폐지조례안 주민조례 청구취지 공표
- 2022. 9. 26.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등에 대한 우려 성명 발표
- 2022. 11. 9. 교육부, ‘성소수자’와 ‘성평등’, ‘재생산권’ 등 용어를 삭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입법예고
- 2022. 12. 31. 교육부, ‘2022 교육과정 개정안’ 확정안 공표 및 즉시 효력 발생 예정
- 2023. 2.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결 예정
- 2023.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및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결 예정